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년월일 : 1999.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책인 만큼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의 자녀로 한정함(안 제3조)
- 근로활동 운영 시기는 재학생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으로 함(안 제4조)
- 근로활동 신청은 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제반서류의 확인이 용이한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함(안 제5조)
-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함(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붙임과 같음)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대학생·고등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선발) 도지사는 당해년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